

의안  
번호

2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12호

다. 제출일자 : 2023. 11. 07.

라. 회부일자 : 2023. 11. 14.

2.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치매안심센터’)이 조문에 따라 상이하여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안 제1조)

- 「치매관리법」 개정(시행 2018. 12. 13.) :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전문개정

- 안 제1조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통일

나. 법령 현행화를 위하여 종전의 「지역보건법」 제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조례 개정 당시(2015. 9. 30.),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의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는 연관이 없어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로 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제9조(준용)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7.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 제17조<sup>1)</sup>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상위법령 인용 조문인 “ 「지역보건법」 제9조”를 “ 「치매관리법」 제3조<sup>2)</sup>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한 것이고,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제17조 개정으로 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1)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6.(생략)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안 제9조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 회계 규칙」 ”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치매지원 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그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명칭과 센터의 업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